

87.64

婦女보호제도

우리나라의 要保護 여성 정책은 이들 요보호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시책이 아닌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4일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주최로 서울 세라톤위키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부녀복지세미나에서 聖心女大 成敗宣교수(사회사업학)는 『현대의 복

지사업은 △질병과 환경재해 등으로 인한 영세모자가정 △개발된 성폭행으로 점접 늘어나는 미혼모 △유랑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돕지 못하고 아직도 50년대식의 「생존」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세모자가정보호시설

“福社 뒷전”

“行政 위주”

인 모자원은 우리나라에 34개 소문으로 요보호미망인의 1%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모자원입소후 3년이 지나면 자립대책이 마련됐든 안됐든 무조건 나가도록 돼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영세모자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원이 확대돼야 하며, 민간이 운영하든 모자센터설립, 취업지도, 값싼 공영주택 임대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成교수는 주장했다.

미혼모를 위한 정책 역시 행정편의 위주로 돼있다는 지적. 미혼모가 원하는 경우 아기와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전혀없이 아기를 산모로부터 떼어내 입양시키도록 하는 것은 모자간을 분리시키는 비인도적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유랑여성 선도대책은 인권문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것이 成교수의

未婚母 지원보다 母子 떼어놓기로 해결
유락녀도 自立기반조성 외면 격리 급급

주장.

이들에게 적용되는 「유랑행위 등 방지법」은 개인의 보호보다는 국민불기정화차원에서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데 급급한 강제성일변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시설에 들어온 유랑여성들은 이 기회를 자립 인생의 시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원망 속에서 자립의지를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成교수는 『이들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의 환경을 이상적으로 꾸며 저절로 자립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가르치는 기술도 본인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成교수는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사회에 있는 것이며 이들 개인의 당면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점차 안정과 자립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국가의 복지시책』이라고 강조했다.

〈金順德기자〉